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안내

2019. 5. 22.



한국환경공단

1. 어린이집 석면조사란?

- 1군 빨암물질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체로 석면조사대상이 확대 됨.
이에 따라 430m²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2019년 5월22일 ~ 2020년 5월21일까지
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해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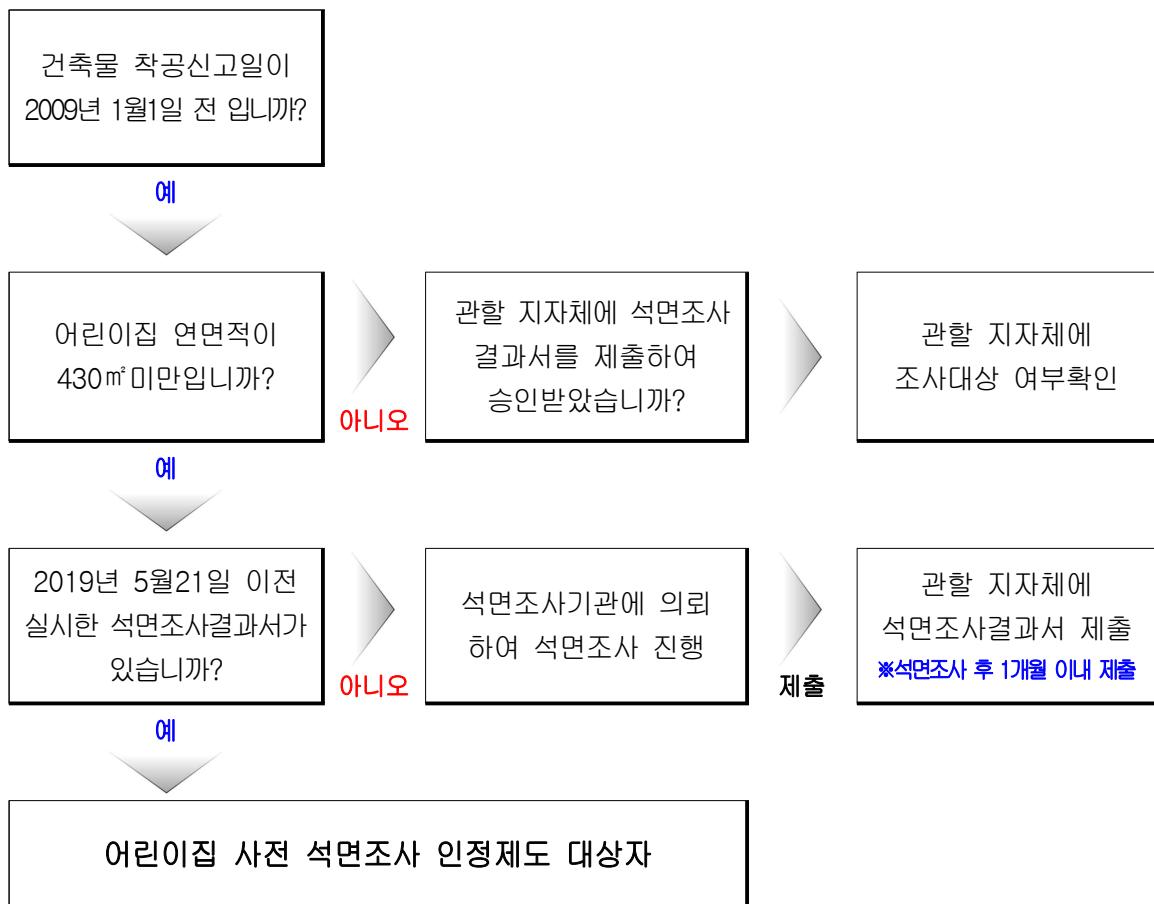
*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2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란?

-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인정받아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절차. (2019년 5월22일 ~ 2019년 11월28일까지 접수)

3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

-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전이며, ③연면적 430m²미만 어린이집(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)



* 2019년 5월21일(포함) 이전.

* 인정제도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환경청, 석면조사대상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, 기타 문의는 석면관리 도움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인정제도 및 조사대상 관련 자주하는 질문 >

① 석면조사 제외대상 및 인정제도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.

⇒ 1)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건축물

2) 연면적 430㎡이상으로 관할 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

* 석면조사대상 관련문의는 관할 지자체

② 인정제도 제외대상 및 석면조사 제외대상입니다. 별도로 승인 받아야하나요?

⇒ 별도로 제출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.

③ 연면적 430㎡미만 어린이집입니다.

5월21일 이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식별번호 및 확인증이 있습니다.

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?

⇒ 제출해야 합니다. 5월21일 이전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한 430㎡미만 어린이집들은 법적으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

신규 회원가입을 하여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기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아이디 사용불가

④ 연면적 430㎡이상 어린이집입니다. 5월21일 이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 하여 승인된 상태입니다. 다시 제출해야하나요?

⇒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

⑤ 아파트 대표어린이집 1곳에서 석면조사를 진행한 경우 단지 내 다른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결과로 제출할 수 있나요?

⇒ 제출 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서가 없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⑥ 석면조사기관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.

⇒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 후 [공지사항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⑦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받았습니다.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
⇒ 인정절차 없이 관할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제출인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가입하여 석면조사결과서 등록 후 정부24(www.gov.kr)에 민원 접수진행.
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(<http://asbestos.me.go.kr/>)

※ 건축물소유자와 어린이집원장이 다를 경우 회원가입시 주의

1)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유형 확인 후 선택하여 가입진행

- 건축물소유자를 확인하여 개인/법인/행정기관 中 선택하여 가입
-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: 세움터(www.eais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- 첨부파일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
- “신청서 제출(회원가입완료)” 후 로그인하여 어린이집인정절차 진행

<아파트, 빌라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적인 예시>

- 홍길동이 소유한 아파트 101호에 성춘향 원장님이 전세로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.
⇒ 소유자인 홍길동님 개인이 회원가입 후 인정절차 신청
* 개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는 회원가입 “개인” 선택
- 000회사에서 소유한 아파트 101호에 성춘향 원장님이 전세로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.
⇒ 소유자인 000회사 법인으로 회원가입 후 인정절차 신청
* 법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는 회원가입 “법인” 선택

※ 건축물소유자 유형 선택과 첨부파일이 잘못된 경우 반려가 됩니다.

※ 건축물소유자 유형별 확인방법과 필요한 첨부파일은 다음페이지 참고

유형1) “어린이집이 상가, 빌라, 아파트 등에 위치한 경우”

<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발급>
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, 갑)								(2쪽 중 제1쪽)	
고유번호					2826011200-3-06110000		명칭	호명청	
대지위치			인천광역시		지번	도로명주소			
전유부분					소유자현황				
구분	층별	*구조	용도	면적(m ²)	성명(병칭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	변동일자	
주	1 층	철근콘크리트구조	공동주택(아파트)	59.78	홍길동 예)680101-1*****	**시 **구 **동	1/1	2018.11.12 소유권보존	
- 이하여백 -									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		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		
※ 인정제도 관련 대상자		
개인	법인	행정기관
가입하기	가입하기	가입하기

*첨부파일 1	찾아보기...	파일설명	건축물대장 ※인증번호입력
첨부파일 2	찾아보기...	파일설명	
신청서 제출			
취소			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: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“개인” 선택
- 회원가입 첨부파일 :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첨부

※ 건축물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유형에 해당하는 “법인”, “행정기관”을 선택해야 함.

유형2) “어린이집이 일반건축물, 단독건물 등에 위치한 경우”

<일반건축물대장(갑) 발급>

일반건축물대장(갑)					(2쪽 총 제1쪽)		
고유번호					명칭	호수/가구수/세대수 0호/0가구/0세대	
대지위치			인천광역시		지번	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	
※ 대지면적		m ²	연면적	1,390.24m ²	※ 지역	※ 지구	※ 구역
※ 건폐율		%	※ 용적률	%	높이	지붕 (철근)콘크리트 평스라브	부속건축물 m ²
※ 조경면적		m ²	※ 공개 공지·공간 면적	m ²	※ 건축선 후퇴면적	※ 건축선 후퇴거리	m
건축물 현황					소유자 현황		
구분	층별	구조	용도	면적(m ²)	성명(명칭) 주인(법인)등록번호 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주소	소유권 지분
주33	지1	철근콘크리트구조	노유자시설(기계실)	89.44	*재단/ **법인/ **시/ **교육감	인천광역시	변동일 변동원인
주33	1층	철근콘크리트구조	노유자시설(직장보육시설)	280.84	**		2018.05.01 소유자등록
					1 / 1		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및 필요 사업자등록증 안내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

※ 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 법인 **행정기관**

[가입하기](#) [가입하기](#) [가입하기](#)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

※ 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 **법인** 행정기관

[가입하기](#) [가입하기](#) [가입하기](#)

<재단,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>

⇒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“**법인**” 선택

⇒ **재단, 법인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(소유자가 본점인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 필요)

<행정기관 등이 소유한 경우>

⇒ 어린이집 건축물소유자 “**행정기관**” 선택

⇒ **행정기관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※ 건축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“개인”으로 선택 사업자등록증은 미첨부

※ 건축물소유자 사업자등록증 첨부(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첨부시 반려됨)

유형3) “공동소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인 경우”

<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발급>

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(을) 건축물현황									(16쪽 중 제6쪽)
고유번호					명칭	특이사항			
대지위치		부산광역시	지번		도로명주소	부산광역시 [REDACTED]			
건축물현황									
구분	건축물명칭(번호)	도로명주소	건축물 주구조	건축물 지붕	층수	용도	연면적(m ²)	변동일	변동원인
주77	[REDACTED]	부산광역시 [REDACTED]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	1/23	어린이집	238	2001.06.21		신축
주78	[REDACTED]	부산광역시 [REDACTED]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	1/25	관리노인정	1,035.57	2001.06.21		신축
주79	[REDACTED]	부산광역시 [REDACTED]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	1/25	관리사무소	92.238	2001.06.21		신축

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
2019년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받으신 분
※인정제도 관련 대상자

개인	법인	행정기관
가입하기	가입하기	가입하기

사업자등록증
(법인사업자:본점)
등록번호 : [REDACTED]
법인명(단체명) : [REDACTED]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대표자 : [REDACTED]
개업연월일 : 2008년 01월 01일 법인등록번호 :
사업장소재지 :

- 회원가입 유형선택 :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 “법인” 선택 후 **입주자대표회의 명**으로 가입
- 회원가입 첨부파일 : **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** 첨부

2.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

2-1) 로그인 이후 “어린이집 인정절차신청” 클릭

2-2) 신청서 작성 후 신청(접수)

- 조사결과 : 조사결과 있음 선택
- 석면건축물여부 : 석면조사결과 석면면적 50m²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 선택
- 석면건축물여부 확인방법 : 석면조사결과서 내용중 “석면함유 건축자재 합계”와 같이 석면면적이 기재된 부분 확인

※ 석면조사결과서는 전체파일 첨부(일부만 첨부시 반려됨)

※ 석면지도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로 첨부해야 함

<회원가입 및 인정제도 신청 자주하는 질문 >

① 회원가입시 주소입력이 되지 않습니다.

⇒ Internet Explorer 11버전 이상 또는 크롬(chrome)브라우저에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②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?

⇒ 세움터(www.eais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.

③ 건축물 소유자와 어린이집 대표가 다른 경우 제출은 누가해야 하나요?

⇒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및 후속되는 모든 신청은 **건축물 소유자가 진행**해야 합니다.

※제2조(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)

-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(생략)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**건축물석면조사를하도록 하여야 한다.**
- ③ (생략)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.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⇒ 회원가입은 건축물소유자(법인)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건축물대장(총괄표제부)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⑤ 지자체 행정기관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. 회원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⇒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어린이집건축물소유자(행정기관)를 선택하고 지자체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첨부파일은 건축물대장과 지자체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*** 기타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**

⑥ 가입유형 선택을 잘못했습니다. 변경할 수 있나요?

⇒ 신규로 재가입해야 합니다.
다만,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기존아이디는 탈퇴해야 합니다.

⑦ 회원가입 서류(건축물대장, 사업자등록증)를 보완하고 싶습니다.

⇒ 회원정보수정메뉴에서 첨부된 파일 삭제 후 재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[어린이집인정절차현황] 메뉴에서 ‘상태’ 확인

1-1) 인정신청 결과가 “최종승인”인 경우 지자체 민원접수 진행

번호	접수번호	건축물명	주소	신청(접수)일	상태
3	110005544	신나라4어린이집	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(경서동)	2019-05-15	최종승인(인증)

* 신청결과는 문자통보(회원가입시 기재한 번호)

* 인정통보 받은 후 1개월이내 지자체 민원접수를 진행해야 함

1-2) 불인정인 경우

- 자료보완이 가능한 경우 : 자료 보완 후 인정절차 재신청
-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: 석면조사 재실시 후 인정절차 없이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 진행(정부24 - www.gov.kr)

< 자주하는 질문 >

① 결과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⇒ 결과통보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.

* 「행정절차법」 제11조에 따라 기술검토 기간(인정여부 심사)은 민원처리 기간에 미산입

② 실수로 동일 어린이집 인정절차 접수를 2번하여 인정통보를 2번 받았습니다.

다음 단계인 지자체 민원접수도 2번 해야 하나요?

⇒ 지자체 민원접수는 1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석면조사결과서 민원접수 진행

1) 온라인 접수방법 - 정부24(www.gov.kr)

- 정부24 접속 후 “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” 검색하여 신청
- 준비자료 : 건축물 식별번호

통합검색

전체 ▼ |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🔍 결과 내 재검색

신청서비스 1건

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

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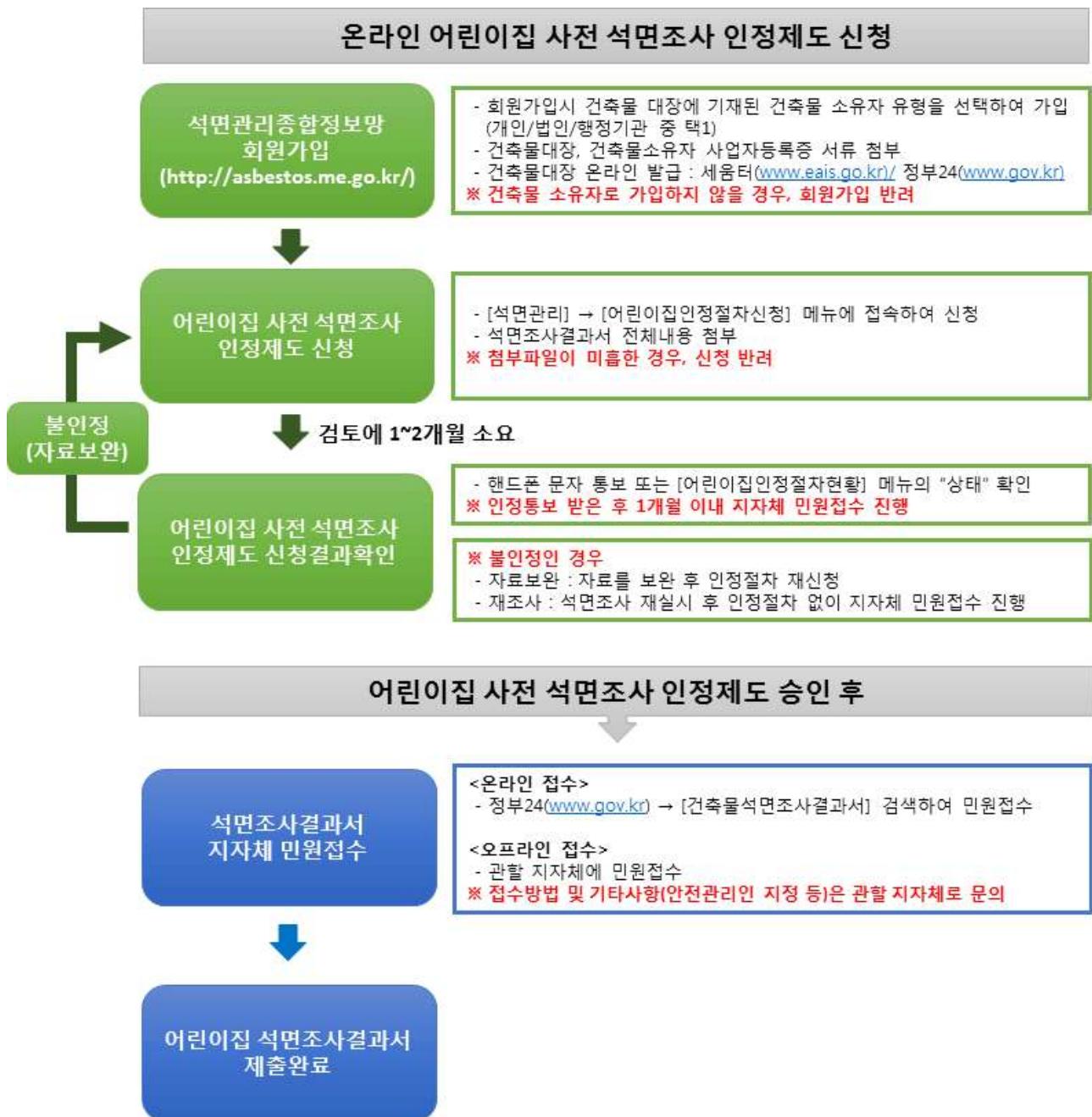
민원서비스 환경부 인증서 불필요 신청

2) 오프라인 접수방법

- 관할 지자체에 민원접수

※ 자세한 제출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.

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흐름



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

1. 제출되어야 할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 조사대상 파악

- 석면조사기간(2019.5.22 ~ 2020.5.21) 이후 제출(2020.6.21.까지) 되어야 할 어린이집 명단 파악.

2. 정확한 제도 안내

• 건축물석면조사 생략대상

- 2009년 1월1일 이후에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이 적용된 건축물.
*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 31조(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)

• 어린이집 연면적 430m²이상 어린이집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(2012.04.29.) 부터 대상인 어린이집으로 지자체 관리대상에 있어야함.
※ 누락된 어린이집인 경우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에 제출

[주요 QnA]

- (1) 기준에 지자체에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연면적 430m²이상 어린이집입니다.
이번 어린이집 조사대상확대로 석면조사를 재실시 후 제출을 해야하나요?
⇒ 석면조사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
(지자체)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중인 어린이집인지 확인필요
- (2) 연면적 430m²이상 어린이집입니다. 16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석면조사를 17년도에 실시하였지만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도 인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⇒ 지자체에 조사대상 확인 후 인정절차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지자체) 건축물석면조사 누락 대상인지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.

• 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연면적 430m²미만 어린이집

- 인정절차 진행 후 지자체에 [별지 제10호서식] “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” 민원접수.
※ 건축물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

• 2019년 5월22일 이후 석면조사를 완료한 연면적 430m²미만 어린이집

- 인정절차 없이 지자체에 [별지 제10호서식] “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” 민원접수.
※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

•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

- 지자체 담당자는 지자체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※ 첨부파일인 건축물대장은 인정제도 대상 어린이집의 건축물대장을 모아서 첨부할 것

3. 온라인(정부24), 오프라인(방문)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

* 인정절차 대상 어린이집이 인정절차 없이 민원접수하는 경우 반려해야 함(인정여부 확인 필수)

- 정부24 접수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.
- 방문 접수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접수 후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.
 - ①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지자체에 방문접수하는 경우
 - ②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미등록 후 지자체에 방문접수하는 경우
 - ③ 번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후 처리.

4. 석면관리종합정보망 DB등록

-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(승인) 후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DB등록

석면조사결과업무

석면조사대상건축물DB

석면조사결과제출현황(일별)

안전관리인현황(일별)

안전관리인

*석면건축물관리대장

석면건축물 제외신청

법적의무대상건축물현황

다중이용시설 사설별현황

석면조사대상건축물DB

검색

Total [redacted]

조사대상건축물등록 > | **등록 >** | Excel 다운로드 >

번호	건물명	동명	주소	구분	구분2	석면	건축물여부	연면적	안전관리인	건축물	지정여부	식별번호
[redacted]												

<정보망 등록화면>

5.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안내

-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련 내용안내.